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114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송호철

별지